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2호 2016. 2. 15. (월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44호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11호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 9
- 하동군 고시 제2016-12호 하동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11
- 하동군 고시 제2016-1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9차 ..... 13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132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이정석) ..... 16
- 하동군 공고 제2016-143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하동군 공고 제2016-144호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공고 ..... 24

회 람									
--------	--	--	--	--	--	--	--	--	--

( 2 ) 제 452 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44호

###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바.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범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하 동 군 공 보

### ( 4 ) 제 452 호

5. 산림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④ 제3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신고방법)**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불법행위의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6 ) 제 452 호

[별표 1]

적용범위 및 지급 금액(제4조 관련)

적용범위	지급금액	비고
1.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자 가. 개인 나. 기관·단체	3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를 신고한 자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단,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단,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사.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만원 1만원 5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산림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제7조 관련)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접 수 공무원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피신고인 성명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 치	위반행위	

하 동 군 공 보

( 8 ) 제 452 호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제9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산림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하동군 고시 제 2016 - 11호

##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

# 하 동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황계지구, 황보지구, 방화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황계지구 :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 34번지 일원(177필지/111,820㎡)

나. 황보지구 :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 656번지 일원(155필지/63,094㎡)

다. 방화지구 :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54번지 일원(361필지/187,036㎡)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 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가. 일필지조사

- 일필지조사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한 일필지조사서 작성

- 일필지 조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한다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452 호

3)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필지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지적재조사측량

<p>기초측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설치</li> <li>- 위성측량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의 방법으로 실시</li> </ul>
<p>세부측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측량, 토탈스테이션측량 등의 방법으로 실시</li> <li>-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li> <li>- 경계점표지 설치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li> <li>- 지적확정조서 작성</li> </ul>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6-12호

## 하동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하 동 군 수

###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 하동군 환경보호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3. 이해관계인은 하동군 환경보호과(☎ 880-2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동 군 공 보

( 12 ) 제 452 호

### 4.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내역

[면적 단위: m<sup>2</sup>]

행정명	행정 면적	소 말 양(염소등산양 포함)사슴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400마리 미만	4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	400마리 이상	1,000마리 미만	1,000마리~ 3,000마리미 만	3,000마 리이상	20,000마 리미만	20,000마리~ 50,000마리 미만	50,000마리 이상
하동읍	29,337,777	3,941,965	4,886,340	5,125,375	6,823,943	18,813,249	21,819,178	25,721,910	13,084,437	18,813,249	24,080,205
화개면	134,024,485	3,952,773	5,052,674	5,328,965	7,298,845	25,167,720	31,337,966	43,501,487	15,843,195	25,167,720	37,452,651
악양면	52,466,771	4,545,602	5,757,521	6,051,113	8,052,146	20,871,857	23,750,139	28,968,625	15,079,053	20,871,857	26,426,720
적량면	41,325,990	2,548,765	3,401,423	3,622,932	5,234,922	20,181,007	24,351,058	30,184,159	12,408,722	20,181,007	27,725,834
횡천면	34,418,579	2,547,937	3,354,209	3,561,973	5,096,261	18,789,971	22,653,804	28,318,950	11,976,981	18,789,971	25,785,044
고전면	36,015,668	2,854,485	3,795,236	4,039,208	5,840,572	21,249,348	25,570,147	31,100,285	13,455,696	21,249,348	28,944,120
금남면	43,198,267	3,691,652	4,695,840	4,948,373	6,753,819	22,408,211	26,402,698	32,062,592	14,583,084	22,408,211	29,526,436
진교면	50,105,501	4,184,242	5,359,366	5,656,514	7,815,996	26,370,016	31,069,107	37,964,134	17,139,874	26,370,016	34,872,579
양보면	34,241,516	2,885,201	3,842,266	4,089,639	5,933,768	22,277,936	25,955,668	31,063,248	14,572,718	22,277,936	28,837,552
북천면	32,901,797	2,809,377	3,666,115	3,883,827	5,449,494	17,020,584	20,411,272	25,543,689	11,463,427	17,020,584	23,309,201
청암면	75,404,637	2,138,577	2,912,059	3,113,203	4,612,325	21,622,384	28,373,322	41,229,663	11,972,920	21,622,384	35,009,416
옥종면	87,815,733	4,756,265	6,275,858	6,670,801	9,590,703	36,694,076	45,180,810	57,953,266	22,567,647	36,694,076	52,380,903
금성면	22,715,824	2,757,420	3,634,238	3,850,489	5,356,631	13,933,849	15,913,687	18,878,648	10,300,266	13,933,849	17,520,617
<b>합계</b>	<b>673,972,546</b>	<b>43,614,259</b>	<b>56,633,147</b>	<b>59,942,412</b>	<b>83,859,424</b>	<b>285,400,208</b>	<b>342,788,855</b>	<b>432,490,656</b>	<b>184,448,020</b>	<b>285,400,208</b>	<b>391,871,279</b>

하동군 고시 제2016-13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9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5.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전나무길 18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2.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45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881-1, 88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전나무길 18	20160205	20070618	옛날 마을에 큰전나무가 있 어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산235-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16	20160205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 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 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 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65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173	20160205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52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60-57	20160205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851-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31	20160205	20070618	동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0	20110729	20070618	두전 서쪽에 있는 한옥정이 라는 지명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2	20160205	20070618	두전 서쪽에 있는 한옥정이 라는 지명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60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괴목길 11-27	20160205	20070618	괴목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29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27	20160205	20070618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하여 붙여진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55	20160205	20070618	문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559, 55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글길 142	20160205	20080402	고송산 한쪽발치 음지쪽에 위치하여 겨울이면 별시간이 적어 추운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산22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54-8	20160205	2009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산65-1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203	20160205	2009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 하 동 군 공 보

( 15 ) 제 45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348-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숙재1길 174-49	20160205	20090302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35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50-9	20160205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산314-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71-67	20160205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 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452 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5>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6-132 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이정석	주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2359-5
소하천명		세동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9(구)		
	면적	127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16.4.13~2021.4.12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6-143호

##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안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1조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 「산림자원의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수정, 제2조 제2호 중 “ 「도로법」 제8조”를 “ 「도로법」 제10조”로 수정,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91, FAX 880-2469, e-mail [myjeong20@korea.kr](mailto:myjeong20@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 18 ) 제 452 호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붙임1】

##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도로법」 제8조”를 “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452 호

[별지 제1호 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 종류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 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하 동 군 수 귀 하</b>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현황사진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21조-----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가로수"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 「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0조----- ----- ----- ----- -----.</p> <p>3.·4.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52 호

[별지 제1호 서식]

<현 행>

2.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법인·사업자)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 종류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 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p>「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하 동 군 수 귀 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현황사진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개 정 안>

3.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명칭)			<u>생년월일/</u>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 종류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 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하 동 군 수 귀 하</b>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현황사진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하동군 공고 제 2016 - 144호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1호) 제4조 제1항 규정과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 방재, 항만·어항, 공원·조경레저, 폐기물, 환경, 블럭구축 및 우수율제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5-935호)에 따라 작성된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하 동 군 수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 붙임 참조
2. 의견 수렴기간 : 2016.2.3(수)11.00 ~ 2016.2.16(화) 18:00까지 접수문서 인정
3. 의견 수렴방법 : 우편, FAX 및 이메일 접수
  - 주소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 FAX : 055-880-2249 (송신 후 문의전화로 접수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 cjk2261@korea.kr
4. 문의전화 : 경상남도 하동군 안전총괄과(055-880-2253)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 첨부 참조. 끝.



[첨부] 의견서 서식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소속단체(회사)명 :

2. 의견내용

공고(안)	수정(안)	수정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